

## 자연문화재연구실 공무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에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국립문화재연구원장

### 최종합격자 \* 개별문자발송

응시분야	응시번호	합격자	비고
공무직근로자 (문화재안내해설사 다급)	20	김**	
	17	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기간 및 방법 : 2024. 5. 2.(목) 출근 시 운영전시팀으로 제출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1부(필히 채용신체검사용으로 제출)
  - 반명함 사진(3×4) 이미지 파일(jpg)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통장사본 1부(급여지급용 계좌)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붙임1 서식 작성)
  - 국립문화재연구원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붙임2 서식 작성)
  - 기타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지사항

-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 ☎ 042-610-7612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자연문화재연구실 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4년 월 일

채용 예정자: (서명)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귀하

## 붙임 2

### 국립문화재연구원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기간제 · 파견 ·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고용노동부)」과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18.11.7.)」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5.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기간제/파견/용역/신규채용)로,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년 월 일부터 근무를 시작(또는 시작 예정)하였다.

2-1. 본인은 (구직사이트/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지인 소개/친인척 소개/기타 사유)의 경로로 해당기관(업체)에 취업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원에(기간제/파견/용역/신규채용)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2-2. 본인은 ( ) 사유로 월 일 이후 입사하였다.

<< 작성예시 >>

-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  
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

3.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 )촌 이내의 관계로, ( )에 근무 중인 (성명 :

3-1. (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 · 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확인자 : (서명/인)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① 수집 · 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 · 이용 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입사방식, 문화재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귀하